



# 2009년도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제.개정현황 ▼

2009.09.29.

자성대수입식품검사소 이승현



# 행정절차법 (1998.01.01.)

## 행정절차제도

행정절차제도는 국민의 행정참여를 도모함으로써 행정의 공정성, 투명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고 국민권이 침해소지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사전 규제적 제도장치임.

행정절차법에서 말하는 행정절차라 행정처분, 행정사 이의예고, 행정예고, 신고, 행정지도 등의 업무 수행시 행정청이 사전에 상대방, 이해관계인 등 국민과 가져야 할 대외적 절차를 말함.

제46조 (행정예고) ① 행정청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정책, 제도 및 계획을 수립, 시행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를 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예고로 인하여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거나 기타 예고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국민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주는 사항
2. 많은 국민의 이해가 상충되는 사항
3. 많은 국민에게 불편이나 부담을 주는 사항
4. 기타 널리 국민의 의견수렴이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령의 이범을 포함하는 행정예고의 경우에는 이의예고로 이를 갈 수 있다.

③ 행정예고기간은 예고내용의 성격등을 고려하여 정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일 이상으로 한다.



**NAVER**

들어보세요!  
네이버스토리

#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



- \* 고시 제2009-7호(2009.03.02.)
- \* 고시 제2009-24호(2009.05.07.)
- \* 고시 제2009-66호(2009.08.13.)
- \* 고시 제2009-154호(2009.09.14.)



연과 견과류  
총 아플라톡신(B1, B2, G1 및 G2의 합) | 멜라민

총 아플라톡신(B1, B2, G1 및 G2의 합) (2009년 9월 1일부터 시행)



- \* 곡류, 두류, 땅콩, 견과류 및 그 단순가공품(분쇄, 절단 등)
- \* 곡류가공품 및 두류가공품(규격외 일반가공식품)
- \* 장류(메주 제외) 및 고춧가루

15  $\mu\text{g}/\text{kg}$  이하  
(단, B1은 10  $\mu\text{g}/\text{kg}$  이하  
이어야 한다.)

멜라민 (Melamine)



- \* 특수용도식품 중 영아용 조제식, 성장기용 조제식, 영·유아용 곡류조제식, 기타 영·유아식, 특수의료용도식품
- \*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 따른 조제분유, 조제우유, 성장기용 조제분유, 성장기용 조제우유, 기타조제분유, 기타조제우유
- \* 상기 이외의 모든 식품 및 식품첨가물

분거출  
물 기준

2.5 mg/kg 이하

연관 검색어 | 푸모니신 | 오크라톡신 | 베조피렌 | 중금속

푸모니신 (Fumonisin)



* 옥수수	4 mg/kg 이하 (B1 및 B2의 합으로서)
* 옥수수 단산가공품(분쇄, 절단 등) * 옥수수 가루	2 mg/kg 이하 (B1 및 B2의 합으로서)

오크라톡신 A (Ochratoxin A)



* 밀, 보리 및 호밀 * 커피콩, 볶은커피	5 µg/kg 이하
* 인스턴트커피	10 µg/kg 이하

연과 기생어  
산 및 기

푸모니신  
L

오크라톡신  
L

베조피레  
L

중금속  
중금속

베조피레



\* 숙지황 및 견지황

5  $\mu\text{g}/\text{kg}$  이하

다류(중금속)



\* 납(mg/kg) : 2.0 이하  
[단, 침출차는 5.0 이하  
액상차는 0.3 이하(강화)]

\* 카드뮴(mg/kg) : 0.1이하  
[액상차에 한한다(신설)]

과자류(유미과) 산가 규격 개정(와화)

즉석조리식품의 세균수 규격 다서조항 신설

“유통처리식품에 한한다” 를 “유통처리식품에 한하  
며,

유미과는 3.0이하” 로 한다.  
“즉석조리식품에 한한다” 를 “즉석조리식품에 한하  
며, 발효제품 또는 유산균 첨가제품은 제외한다.”로 한  
다.

연관 검색어 | **세균수** | 아세퀴노실 | 디메토모르프 | 포세틸-알루미늄

**고시 제2009-66호(2009.08.13.)** ▼

세균수 : 1 g 당 10,000 이하, “**미봉한 초콜릿제품에 한하며 유산균 함유 제품은 제외한다**”  
 “**미봉한 초콜릿제품에 한하며, 발효제품 또는 유산균 첨가 제품은 제외한다**” 로 한다.

**고시 제2009-154호(2009.09.14.)** ▼

- \* 아세퀴노실(Acequinocyl) : 차 3.0
- \* 디메토모르프(Dimethomorph)\* : 수삼 0.2, 3.0, 견삼 1.0, 15, 홍삼 0.7, 10
- \* 포세틸-알루미늄(Fosetyl-aluminium) : 수삼 2.0 [별표 5의 개정규정은 2010.01.01.부터 시행]



#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 ▼

- \* 고시 제2009-1호(2009.01.02.)
- \* 고시 제2009-51호(2009.07.10.)
- \* 고시 제2009-59호(2009.07.24.)



건강기능식품  
의 효능

몰리브데산아모늄, 아셀레산나트륨, 염화크롬

아세트, 메틸알콜

나타마이신

건강기능식품의 영양소 원료로 사용되는 식품 첨가제

몰리브데산아모늄, 아셀레산나트륨, 염화크롬 영양소보충용 건강기능식품 이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아세트

1. 유지성분의 추출 또는 분리 등의 목적 이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사용시에는 최종식품의 완성전에 제거하여야 한다.

2.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원료 : 0.03g/kg 이하

메틸알콜

1.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원료 : 0.05g/kg 이하

건강기능식품 기능성원료 추출 등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식품 첨가제

자연치즈 및 가공치즈의 표면 이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사용량은 나타마이신으로서 1mg/dm<sup>2</sup> 이하이며 표면으로부터 깊이 5mm 이상에서는 검출되어서는 아니된다.

치즈에 보조료로 사용되는 나타마이신 첨가제

연과 기생어  
관련 품목

보조료 지정취소

사용기준

아세셀팜

응어의 표어

보조료 식품품 지정취소

내분비독성 및 생식독성 등 안전성에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파라옥시안시향산부틸, 파라 옥시안시향산이소부틸 및 파라옥시안시향산이소프로필 [경과조치(동일사 동일식품) : 2009년 12월 31일]

과산화베조이(희석) 등 14식품품의 사용기준을 개정

식품의 기준 및 규격 및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의 전면개정에 따라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에 수록된 개별 품목의 사용기준에 있는 식품유형과 일치하지 않아 이를 통일

아세셀팜카를 사용기준 개정

소스류 : 1.0g/kg 이하, 캔디류 : 1.0g/kg 이하

「응어의 표어」 신설

과일류 또는 채소류의 저장품, 어패건제품, 어패염장품, 어패냉동품, 건조감자, 빵튀기, 플라워페이스트, 망고칩트니, 건조과실류, 단무지, 건조채소류, 콜라형음료, 설탕대체식품, 군약분, 어패류, 기타식품, 영양소보충용건강기능식품

연관 기사에  
대한 링크

규격의 신설 및 강화

사용기준 신설 및 개정

품목의 신설 및 개정

규격의 신설 및 강화

고시 제2009-59호  
(2009.07.24.)

과산화수소, 과산화초산

사용기준 신설 및 개정

품목의 신설 및 지정취소

탈크(탈크) : “납” 규격 강화, “석면, 건조감량” 규격 신설  
이드록시프로필메틸셀룰로오스 : “프로필렌글로이드린” 규격 신설 및

“납” 규격 강화

스테비올배당체(스테비오사이드) : “엑성, 잔류용매 및 회분, 납” 규격 신  
설

및 “비소” 규격 강화.

카라기난 : “잔류용매, 세균수, 대장균, 살모넬라” 규격 신설  
펄티나아제 : “납” 규격 강화 및 “대장균” 규격 신설

[고시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신설 : 이.디.티.에이.이나트륨, 이.디.티.에이.칼슘이나트륨, 철크로로필린나트륨, 수소  
개정 : 소르비산, 소르비산칼륨, 소르비산칼슘, 아시향산, 효소처리스테비아

신설 : 이드록시프로필셀룰로오스, 조제해수염화마그네슘, 아스파라기나아제  
지정취소 : 콘색소, 누리장나무색소, 땅콩색소



#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 ▼

\* 고시 제2009-29호(2009.05.13.)

\* 입안예고  
    입안  
    고시 제2009-204호(2009.09.14.)



연과 검색어 | 연화비닐수지(PVC) | 기구 및 용기, 포장의 기준 및 규격 전부개정고시(안)

고시 제2009-29호(2009.05.13.) ▼

연화비닐수지(PVC)에 대한  
요청규격 시험  
요령 및 기준

디부틸프탈레이트, 벤질부틸프탈레이트, 디-n-옥틸프탈레이트,  
디이소데실프탈레이트, 디이소노닐프탈레이트, 디에틸헥사아디페이트  
에 대한 요청규격 시험  
요령 및 기준

고시 제2009-204호(2009.09.14.) “기구 및 용기, 포장의 기준 및 규격 전부개정고시(안)” ▼

- \* 기구 및 용기, 포장 기준 및 규격의 분류체계 개선
- \* 일부 합성수지재 재질별 규격 통폐합(여행 니종 → 크리종)
- \* 유류물질 유래 유해물질에 대한 안전기준 강화



**KFDA**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Busan Regional Food & Drug Administration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